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6BL “우방 아이유셀”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1.08(목)입니다. (우주택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임.)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입니다.
- 해당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2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북 안동시, 예천군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며, 이 지역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해당지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동시, 예천군)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지구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4에 규정된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 배정물량을 게시 후 접수하므로,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당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당사 및 청약접수는 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제1·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제1순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85㎡이하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01.27.)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1년간 다른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 민영주택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차후 소유권이전 시 등기부등본상에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가등기 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예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9조의4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하는 주택은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01.27.)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세대원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 776호 (2015. 01 .0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6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12~25층 12개동 1,086세대 (특별공급 72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 55,793㎡, (공동주택 : 55,209.5㎡, 근린생활시설 583.5㎡)】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 준)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	공급호수							비고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장포함	계약 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전용 면적	주거 공용면적	계				소계	이전기관 종사자등	일반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민영 주택	2015000009-01	84.9962 A	84.9962	25.8407	110.8369	39.6179	150.4548	50.6652	229	114	11	11	6	76		
	2015000009-02	84.9963 B	84.9963	26.0203	111.0186	39.6189	150.6375	50.7482	130	65	6	6	3	44		
	2015000009-03	84.9490 C	84.9490	26.9286	111.8776	39.5959	151.4735	51.1410	292	146	14	14	8	96		
	2015000009-04	84.9578 D	84.9578	26.0671	111.0249	39.6001	150.6250	50.7511	435	217	21	21	13	142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주택형	해당 동	층	세대 수	세대별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차	계약금(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15.02.28)	(15.06.28)	(15.10.28)	(16.02.28)	(16.06.28)	16.10.28)	(17.02.28)	
84.9962 ㎡ A	101동 102동 104동 105동 107동 108동	1층	5	37,810	172,190	210,000	10,000	1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63,000
		2층	12	37,810	179,190	217,000	10,000	1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65,100
		3층	12	37,810	186,190	224,000	10,000	1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67,200
		기준층	200	37,810	196,390	234,200	10,000	13,420	23,420	23,420	23,420	23,420	23,420	23,420	70,260
84.9983 ㎡ B	101동 102동 104동 107동 108동 111동	1층	1	37,872	171,328	209,200	10,000	10,920	20,920	20,920	20,920	20,920	20,920	20,920	62,760
		2층	7	37,872	178,328	216,200	10,000	11,620	21,620	21,620	21,620	21,620	21,620	21,620	64,860
		3층	7	37,872	185,328	223,200	10,000	12,320	22,320	22,320	22,320	22,320	22,320	22,320	66,960
		기준층	115	37,872	193,228	231,100	10,000	13,110	23,110	23,110	23,110	23,110	23,110	23,110	69,330
84.9490 ㎡ C	101동 102동 104동 105동 107동 108동 111동	1층	10	38,165	171,835	210,000	10,000	1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63,000
		2층	14	38,165	178,835	217,000	10,000	1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65,100
		3층	14	38,165	185,835	224,000	10,000	1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67,200
		기준층	254	38,165	196,035	234,200	10,000	13,420	23,420	23,420	23,420	23,420	23,420	23,420	70,260
84.9578 ㎡ D	103동 106동 109동 110동 112동	1층	7	37,874	172,126	210,000	10,000	1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63,000
		2층	18	37,874	179,126	217,000	10,000	1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65,100
		3층	18	37,874	186,126	224,000	10,000	1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67,200
		기준층	392	37,874	196,326	234,200	10,000	13,420	23,420	23,420	23,420	23,420	23,420	23,420	70,260

-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함.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의 경우 1층 이외의 층이 최저층임.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3)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라인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해당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하단의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85㎡이하 분양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유사한 주택형이라 할지라도 계약면적에 따라 관리비 등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
-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반만 납부하고 되거시 되돌려드림)
- ※ 중도금은 무이자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수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납부함.
- ※ 당 아파트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 상기 각 주택형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법정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음.
-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 ※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절차 절차 및 택지개발지구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 은 적용되지 아니함)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대한주택보증(주)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이외에는 중심치수로 산정함(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건물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오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로 동호수 배치도를 참조하시기 바람.
(층, 호수는 준공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등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옵션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청약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정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전에 파악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청약접수 은행 및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2013.5.31)으로 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1순위 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1순위 청약이 가능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 우선순위 포함)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특별 공급

■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이전 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2015. 01. 13(화) <09:00 ~ 17:30> ~ 2015. 01. 14(수) <09:00 ~ 15:00>,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
- 기타 특별공급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15. 01. 14(수) 10:00 ~ 15:00 경북 안동시 태화동 782-7번지 우방 아이유셀 견본주택

• 당첨자 선정일시 및 장소

- 이전 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2015. 01. 14(수) 17:00 대구시 동구 신암3동 242-37번지 흥보관,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참조
- 기타 특별공급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15. 01. 14(수) 17:00 경북 안동시 태화동 782-7번지 우방 아이유셀 견본주택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m² / 세대)

구 분	84m ² A	84m ² B	84m ² C	84m ² D	계
지방이전공공기관종사자등 특별공급	114	65	146	217	542
일 반 특별공급	11	6	14	21	5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11	6	14	21	52
신 혼 부 부 특별공급	11	6	14	21	5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	3	8	13	30

• 일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안동시 태화동 782-7번지)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만 가능함)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특별공급(이전기관종사자 등) 신청방법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apt2.housing.or.kr)" 바로가기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에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B 6BL 우방 아이유셀" 아파트 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완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2015. 01. 13(화)09:00~17:30, 2015. 01. 14(수) 09:00~15: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기타특별공급은 배정순,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동시 발표함.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이후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무작위 추첨함.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해당되는 장소에 방문 신청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내

• 유의 사항

-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신청 불가함.
- 특별 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08)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서약서를 기본으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하며(1회 특별공급 간주함),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 체결 이후라도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 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신청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08)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4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자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함,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신청 불가함>
 -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 기타 범위는 경상북도 내부방침을 따르기로 한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특별공급 공동서류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이혼·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 'www.ap2you.com'에서 발급가능). 단, 특별공급 대상자 중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 특별공급 신청서 및 서약서 (별첨 서식)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신청은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공동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특별공급 공통사항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예천군, 안동시) 및 광역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신 분으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함.
 -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85㎡ 이하 신청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또는 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 후 재변경할 수 있음.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예천군, 안동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

※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 특별공급 추천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19조 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천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전용면적 85㎡이하)**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08) 현재 주택건설지역(예천군, 안동시) 및 광역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08) 현재 주택건설지역(예천군, 안동시) 및 광역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전용면적 85㎡이하)**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08) 현재 주택건설지역(예천군, 안동시) 및 광역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하여야 함.
- ※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 하	4인	5인 이 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606,216원 이하	5,102,802원 이하	5,357,44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527,459원 이하	6,123,362원 이하	6,428,935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9항)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1.08.)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이전기관종 사자	○		인감증명서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 있지 아니한자, 미혼.이혼.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본인	(별지 제1호서식)
	○		특별공급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신청은 한국주택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일반 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차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일반 공급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08) 현재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당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1항 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됨.
(단 당해 주택의 공급 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0조 3항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예정지역인 경북 안동시, 예천군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서의 선정에 제한을 받음
- 본 주택에 청약관련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입주자자격 및 신청자격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격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정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적용	2015년 01월 15일 (목요일)	• 접수장소 :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보유자) www.kbstar.com - 인터넷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또는보유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 : 00 ~ 17 : 30	• 일시 : 2015년 01월22일 (목요일)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http://andong2.iusell.co.kr)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15년 01월 16일 (금요일)	• 접수장소 : - 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www.kbstar.com - 인터넷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 : 00 ~ 17 : 30	

-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비율	40%	60%

- 가정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자격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정제 적용 세부 기준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 산정기준"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	---

•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 주 택 기 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② 부 양 가 족 수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 입 주 자 저 축 가입기간	17	3명	2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총 점	84점 만점 기준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감점 산정기준

구분	기준	감점 항목	감점점수
		소유주택수	
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

• 청약가점 항목의 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①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 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항·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 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항·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항·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 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 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 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 가족수의 인정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 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 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 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19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85㎡ 초과 102㎡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함.

- 가정항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정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음.

■ 청약신청 접수방법

- 공통 :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수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정제 청약 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정제로 자동 청약 접수함)으로 하며, 가정제 입주자선정 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을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 용 대 상	-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에 해당되는 분 - 3순위 : बैं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계신 분(일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인터넷청약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 접속→청약센터→청약신청

■ 청약신청시 구비사항(은행 창구 방문 청약자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3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에 한함) 또는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원 1통) • 본인도장 및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및 정정,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주택형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청약 신청금	10만원	* 주택청약 인터넷 청약시 (08:00~17:30) -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신청시 बैं킹계좌에서 자동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청약시 (09:00~16:00) - 가능한 당해지역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제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5. 01.23 (금) 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이후 자동 이체됨.
 - 3순위 신청금 환불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환불시 구비서류 :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단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
 - 3순위(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신 청 방 법
특별공급	•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은 한국주택협회 전산망을 이용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함. • 기타 특별공급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주의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신청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 당첨자 명단 및 동·호수 추첨일시는 당첨자 발표시 건물주택에 별도 공고함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당첨 사실조회
	이용기간	2015년 01월 22일 ~ 2015년 02월 01일 (10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1588-9999 (서비스번호 : 913)	1369 (서비스번호 : 5#)	
	이용기간	2015년 01월 22일 ~ 2015년 02월 01일 (10일간)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 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청약신청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년 01월 22일 (09: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 : 2015. 01. 27(화) ~ 2015. 01. 29(목) (3일간, 시간 : 10 : 00 ~ 16 : 0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건본주택 (주소 : 경북 안동시 태화동 782-7번지) / 연락처 (1899-8860)
당사 건본주택 (주소 : 대구 광역시 동구 신암3동 242-37번지) / 연락처 (1899-8860)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종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청약 가정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우리은행 봉선동지점의 아래계좌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계좌부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공동주택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102-629054	대한주택보증(주) 피에프금융 2 센터
발코니 확장대금	우리은행	1005-002-629057	대한주택보증(주) 피에프금융 2 센터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구분	융자기관	비고
금융기관	우리은행	중도금(분양가의 60%)은 지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함. ※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고지함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 우리은행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미선택 또는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 및 중도금대출 무이자 적용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조]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수준(장판,벽지,조명,위생기기,타일,창호,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을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바닥재(온돌마루, 타일,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바닥미장,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2) 벽	초배지, 벽지, 벽체마감 일체(벽지, 타일, 래핑, 시트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현관장, 화장대, 침실불박이장, 드레스룸장 등 가구일체	미장 또는 석고보드 마감
3) 천정	천정지(벽지류), 반자돌림(물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정도장	천정을 위 석고 보드 마감
4)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욕실조명 포함) 및 각종 스위치	전기 배관/ 배선, 비상등
5) 욕실	천정, 타일, 위생기구, 샤워부스, 욕실엑세서리, 욕실장, 비데, 욕실스피커폰, 콘센트, 바닥배수커버	방수, 미장,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6)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엑세서리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주방액정TV, 가스쿡탑, 전기오븐등 주방가전 일체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7) 창호	문(문틀, 문선, 문짝, 공틀,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일체)	발코니 내부, 외부 PL창호(단창), 세대현관 방화문, 소방관련 방화문
8) 가구류 및 기타	가구류 일체(신발장, 워크인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주방가구일체, 침실불박이장, 복도수납장, 창고도어, 드레스룸도어, 시스템가구일체, 욕실가구 등 모든 가구류), 수전류일체	각방 온도조절기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거전용면적	84㎡ A	84㎡ B	84㎡ C	84㎡ D
마이너스옵션금액	23,693,000	23,766,000	23,939,000	23,848,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사항 등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타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금액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거전용면적	84㎡ A	84㎡ B	84㎡ C	84㎡ D
발코니확장금액	10,900,000	12,200,000	13,000,000	14,300,000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확장부위 샷시는 PVC 이중창이 설치되며, 발코니 미확장 부분의 샷시는 PVC 단창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후 거실, 안방, 침실 바닥 마감은 온돌마루 적용함.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칸막이의 제거, 변경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비확장세대는 확장형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현관신발장, 주방 싱크대 축소, 쌀냉장고, 붙박이장, 드레스룸 및 팬트리공간 수납장, 발코니 선반 등)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에어컨 설치부위		설치대수	금액	비 고
84.9962㎡ A	선택1	거실+침실1(안방)	2	3,200,000	• LG전자 • 모델명, 계약일정 및 장소 납부기준은 추후 공지 (건본주택 및 계약시 확인 필요)
84.9983㎡ B	선택2	거실+침실1(안방)+침실(2+3)	3	4,800,000	
84.9490㎡ C		선택3	거실+침실1(안방)+침실(2+3)+침실4	4	
84.9578㎡ D					

2.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임
-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2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추가 선택 품목 중 선택2, 선택3는 가변형벽체 미시공 선택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함.
-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 계약과 별도임)
-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6항 14의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사용검사일기준 약1~2개월 이전 예정)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7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에 납부해야 함. (단,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본 아파트는 당첨된 해당 동호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납입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단지 내부 여건 등 일반 공통 주요사항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와 공급시(분양광고 등 포함)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카달로그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및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별도 대지경계선은 구획되지 않으며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로서의 운동시설(실내외체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물로 사용될 수 없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세대 내, 외부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지층부, 상가동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계획 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이 세대간에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사생활 보호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일반 분양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승인변경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 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단위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당 아파트의 주변 신축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축사항과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색채 및 입면 디자인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심의과정 등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 발생한 인쇄물, 조감도 및 단지 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는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물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정,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보호에 불리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발코니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출과 현관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분양 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포함되지 않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감지기는 모델하우스용 소방시설임.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포트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전 확인바람.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공간의 일부는 지하, 일부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시 공간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홍보물 및 모형CG에 표현된 집기류, 운동시설, 가구 등은 참고 이미지며, 본공사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함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및 농작물경작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개별난방방식임.

■ 그 외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함 .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우체지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정,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개경시 주택법에 의거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종(조경공사, 도배공사, 도장공사등)이 감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입주 개시전 특정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방문토록 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관련 규정에 의한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됨.
- 계약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 처리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각종 1층 필로티 혹은 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사용할 수 있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건축법 그리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한.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경복대청이전신도시내 B-6BL 공동주택구역은 예천남부초등학교 학구이나, 통학거리를 감안하여 2015.09.01자 안동지역에 먼저 신설되는 (가칭) 갈전초등학교로 학구를 변경하였다가, 차후 신설되는 (가칭) 호명초등학교 학구로 조정할 계획임. 또한 중학교는 2015.09.01.자 안동 풍천중학교가 신설대체이전 예정임.
- 본 주택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속한 구역에 건축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까지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음. 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축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시기 지연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이 없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공급 가격에 의해 계산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감속면적이 계약면적의 2% 미만인 때에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경복대청이전신도시 조성부지내 개발계획도 상 장사문화공원(화장장)이 계획되어 있음. (현재 공사 중)
- 부출입구에서 교차로에 이르는 우회전 완화차로 추가 확보를 위한 대지면적 공제부분(133.00㎡)은 도로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후 관리청앞으로 기부채납하게 되며, 기부채납에 해당되는 토지금액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SM그룹의 건설계열 관계사인 (주)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주), (주)우방 사이에 체결된 『브랜드 공동사용 및 시공관리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위 건설사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체분양사업 또는 도급공사를 수행할 경우에 우방아이유셀 또는 아이유셀 브랜드를 공동사용하기로 약정되었으며, 상호 간에 기술력, 인력, 연구개발성과 등의 공유 및 지원을 목적으로 업무제휴되어 있어, SM그룹 계열사들이 공급하는 건축물들은 통일되고 향상된 품질을 고객 여러분께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방아이유셀 아파트 시공사인 (주)우방건설산업의 시공참여 여부와 무관히 위 공동 브랜드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청약자가 우방 아이유셀 명칭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며, 우방아이유셀 명칭사용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14-101-0005100 호	₩ 176,413,09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1. 용어의 정의

- “보증회사”라 함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합니다.
-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 ①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③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④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제4호)
 -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 ①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③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④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사업주체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② 사업주체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③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④ 분양계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⑤ 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⑥ 분양계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⑦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⑧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⑨ 분양계약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⑩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⑪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⑫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⑭ 분양계약자가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분양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⑮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⑯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분양계약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⑰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주택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②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설계고지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 분		설 계 고 지 사 항
주변 현황	공통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녹지	단지 북측에는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음.
	도로	단지 남측에는 24M 도로, 동측에는 13M도로가 조성되어 소음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공공보행통로	106동과 107동 후면 및 109동과 110동 전면부 사이에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출입구	109동과 110동 사이에 주차장 진입 램프가 계획되어있고, 102동과 107동사이 및 106동과 107동사이 차량진출입로가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과 103동 사이에 주출입구, 102동과 107동 사이에 부출입구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차량 진출입	차량 진입은 단지 남측 24M(주출입구), 동측 13M(부출입구) 도로를 통해 진입이 가능함.
	복리시설	단지 중앙부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근린공원접근	북서측 근린공원 진입하는 진입로 등이 계획되어 있음.

단지	공 통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항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아스팔트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아스팔트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에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D.A 위치로 인한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 이동시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내 조정 및 세부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소방비상차 구획에 활용될 수 있음.
		단지 내 일부에 지하주차장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천창이 설치됨.
		단지 출입구, 경비실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간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107동 지하공간옆에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발생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8동 지하공간옆에 기계실/저수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발생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등) 주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발생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세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전면에 계획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주출입구만을 통과하여 접근할 수 있음.
	부대시설	휘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GX룸은 106동 하부에 위치하며, 썬큰광장 및 지하1층 주차장에서 출입할 수 있음.
		도서관,입주자대표실은 107동 지하에 위치하며, 썬큰광장 및 지하1층 주차장에서 출입할 수 있음.
		관리사무소는 107동 지하에, 경로당과 보육시설은 106동과 103동 1층에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내 부대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함. 부대시설의 비품,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서 각 동으로 출입할 수 있음.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1동 측면 근린생활시설에 지상주차장 8대(장애인전용주차 포함)가 설치됨.
		각 동별 2~4개소의 소방 전용주차 구획이 표기됨.
	주차램프	108동 109동 110동 111동 후면 및 102동 104동 전면부에 프로그램주차장이 설치되어 근처 주동 저층부 세대에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내 3개소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설치되며, 근처 주동 저층부 세대에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101동, 103동, 106동, 107동 109동110동)
	단지출입구	주출입구,24M인접 차량진출입로 입구에 경비실 설치됨. 부출입구, 13M인접에 경비실이 설치됨.
	옹벽/방음벽	101동과 102동 사이, 106,107동과 109,110동 사이 공공보행통로 계획됨.
		단지내 일부 구간에 옹벽 및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외관	주동 저층부 2~3개층은 외부용 수성페인트 마감임. 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지층부 2~3개층 일부 석재패널 및 EPS물당 적용되며, 동별 출입구 및 측벽 일부에 석재가 반영되어 있음.)
	101동	전측면에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이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남동측면에 24.13M 도로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차량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2동	전측면에 근린생활시설,측면에 보행자출입구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동측면에 13M 도로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차량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3동	1층에 어린이집, 유아마당 이 있으며 후측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전측면에 24M 도로가 측면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차량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4동	전면부에 프로그램주차장이 설치되어 근처 주동 저층부 세대에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5동	측벽측에 차량이동 램프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차량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6동	1층에 경로당, 전면부에는 부속정원, 지하층에는 운동시설이 있으며, 후면부에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측벽측에 차량이동 램프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차량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며, 후측면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후면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차량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8동	전측면에 13M도로 및 차량회차공간, 전면측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전측면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후면에 프로그램주차장이 설치되어 근처 주동 저층부 세대에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전측면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후면에 프로그램주차장이 설치되어 근처 주동 저층부 세대에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1동	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공통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거실 및 주방 우물천정의 형태, 깊이 등은 소화배관 및 덕트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발코니에는 청소용 급수전,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추후 풍동실험에 의해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소음,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발코니 미확장시에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품목 중 일부가구 등 미제공 품목 및 규격(변동)축소되오니 팔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건축법 그리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세별도)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VAT별도)
건 축 감 리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23,700,000
전 기 감 리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475,450,000
통신,소방감리	세영엔지니어링(주)	120,000,000

구분	적용 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구분	적용 여부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가. 소관 관련 등급			나. 환경 관련 등급		
장능주관	세부 장능항목	장능등급	장능주관	세부 장능항목	장능등급
장능주관을 차인받는 장능주관을 차인받는		★★	수하권 열차	생물종 다양성 관리대응의 다양성 수속	★★★★
화물선 화물수송차량		★★	연료비 절감	중수준 절감	해당없음
저탄소 경계제외 차량수송		★★	에너지절감	에너지절감	★
비수송용	교통수송도구, 철도노선 차량에 수송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타 온실가스 배출저감	해당없음

나. 주요 관련 등급			마.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연성		★	가연성	열원별 및 시설 장치의 조성	★★★★
수리가능성	전통부분 감출부분	★★	보행성	단거리 보행성 전용도로 조성여부	★★★★
내구성		★★	보행성	외부보행성 전용도로 내도부	★★★★
저온·저압하중 저항능력 (외로인양시·외로부) 비내열성 저온성 저수성	구조구조·제스공 해당항목 해당항목	★★★★	보행성	열원·보행성·전용도로의 근접성	★★★★

[illegible]

2014년 12월 08일



[건축물 개요]		[인용 개요]	
건축물명	경복궁도 인전 신도시 B6블록	인용번호	제2014 - 144호
건축 주	임시라	인용기관	한국국사청본부인용팀
준공(예정)일	2017년 6월 30일	유효기간	2014.12.08. ~ 서울출입일
주 소	경상북도 예천군 효령면 경복궁도 인전 신도시 B6블록	[인용 등급]	
층 수	지하2층, 지상15~25층 / 1,086세대	인용등급	일반등급
면 적	165,065.64㎡		특색건축 인종기준
건축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
설 계 자	임현대건축사사무소		환경부고시 제2013-84호

종합등급 ★ ☆ ☆ ☆

Category	Percentage
토지이용 및 교통	58%
에너지 및 환경오염	29%
재료 및 자원	63%
물순환관리	37%
유지관리	61%
생태환경	53%
실내환경	64%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22 –

■ 분양가 내역공개

- 주택법 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등 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파트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가격으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단위 : 원, 부가세포함)

대항목	세분류	금 액
1.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39,152,020,860
	기간이자	527,024,700
	그 밖의 비용	1,522,174,440
2. 공사비(5)	토 목	8,781,587,977
	건 축	124,683,242,105
	기계설비	16,855,292,527
	그 밖의 공종	26,650,875,829
	그 밖의 공사비	14,348,998,412
3. 간접비(3)	설계비	1,201,960,000
	감리비	2,619,150,000
	부대비	13,460,170,400
4. 그 밖의 비용(1)		2,216,202,750
합 계		252,018,70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시공회사

구 분	회사명	법인번호	주소
사업주체	(주)삼라	200111-0013220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21 (궁동)
시공회사	(주)우방건설산업	200111-0026017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동, 산본역사3층 일부)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782-7번지 우방 아이유셀 센텀 모델하우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242-37번지 우방아이유셀 센텀 모델하우스

■ 분양문의 : ☎ 1899-8860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